

기부자 예우

후원에 감사드리며,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은 예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.

| 등급 | 지혜 | 자비 | | 정진 | | 1백만원 이상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| 50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 5억원 이상 | 1억원 이상 | | 5천만원 이상 | 1천만원 이상 |
| 간행물 및 기념품 | 학교소식지 및 달력 발송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연차보고서 발송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기념일 축하카드 발송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감사패/감사장 증정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명절 선물 발송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기부자 명예 현정 | 명예의전당 등재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기금 명칭 부여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학교 행사 VIP 초청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기부금 전달식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학교 시설 및 서비스 이용 | 특수대학원 수업료 감면 (괄호 : 특별과정) | 무료 (무료) | 무료 (무료) | 50% (무료) | 30% (50%) | 20% (30%) | | |
| |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(괄호 : 직계가족) | 무료 (50%) | 무료 (50%) | 무료 (50%) | 무료 (30%) | 50% (20%) | 20% (20%) | |
| | 중앙도서관 이용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만해마을 할인 | 50% | 50% | 50% | 50% | 30% | 20% | |
| | 무료주차 등록 | 0 | 0 | 0 | 0 | | | |
| | 본교출간 도서할인 | 30% | 30% | 30% | 30% | 20% | 20% | 10% |
| 동국대 병원 이용 | 건강검진(년1회) (괄호: 배우자) | 무료 (무료) | 무료 (무료) | 무료 (무료) | 50% (50%) | 30% (20%) | 20% (20%) | |
| | 진료비(외래입원 본인부담금) (괄호 : 배우자) | 무료 (50%) | 무료 (50%) | 무료 (20%) | 20% (20%) | 20% | 15% | 10% |
| | 한방보약 (괄호 : 배우자) | 무료 (50%) | 50% (50%) | 50% (30%) | 20% (20%) | 20% (20%) | 20% (20%) | |
| | 영안실 (괄호 : 배우자) | 무료 (무료) | 무료 (무료) | 50% (50%) | 30% (30%) | 20% (20%) | | |
| | 주치의 | 0 | 0 | 0 | | | | |
| 기본예우 | 세제혜택용 기부금영수증 및 감사서신,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, 기부자명단 등재(홈페이지) | | | | | | | |

● 기부자 예우 참고사항

- 기부자 예우는 누적 납입액 기준으로 제공되며, 적용기간 등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예우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 - 기부내역 조회 방법 : 발전기금 홈페이지(love.dongguk.edu) → 기부자 예우 → 기부내역 조회
- 부동산(건축물, 토지)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상기 표와 동일한 예우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에 해당하며, 배우자 및 직계가족 예우는 기부자 생존 시에 한합니다.
- 일반대학원 수업료 감면은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.
- 예우 프로그램은 관련 규정 및 유관부서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예우 프로그램 관련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 - 예우 상담 전화: 02-2260-3300, 이메일: ilovedgu@dongguk.edu

● 동국대 병원 이용 참고사항

- 진료비 무료 적용기간 : 50억원 이상 기부 시 연간 180일 이내(입원), 5억원 이상 기부 시 연간 90일 이내(입원)
- 치과는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며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합니다.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, 한방보약은 직접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.